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1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병도, 강석주, 김 경,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한 신,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각 조문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촬영물 등을 지칭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등)

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 나.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 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3조제1항 중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 지원
3. 불법촬영물등 ·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 홍보
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 · 법률 · 심리상담 · 의료 등 지원
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1.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u></p> <p>2.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u></p> <p>2. <u>“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u></p>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삭 제>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  
-----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 8. (생략)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  
-----  
--- 불법촬영물등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  
-----  
-----  
-----  
-----.

- 1. 불법촬영물등 -----  
-----

2. ~ 8. (현행과 같음)

제9조(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① -- 디지털성범죄 -----  
-----  
-----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 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  
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  
육·홍보
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  
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  
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업무

제12조(사무의 위탁) (현행 제1항  
과 같음)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sup>1)</sup>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1,678,000천원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비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금액은 1,462,000천원임

-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윈스톱 통합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8종 밀착 지원

·지지도반 4종(상담·삭제·수사·동행지원), 일상회복지원 4종(법률·의료·전문심리상담·타기관연계)

- AI 기술고도화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발견·삭제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료 :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설명서 및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